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7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유용원 • 조지연

김장겸 • 김선교 • 배준영

강선영 • 안철수 • 박덕흠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,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,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.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.

이에 「공무원연금법」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

여를 지급하지 않고,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제2장(외환의죄)"를 "제2장(외환의죄), 제24장(살인의죄),"로 하고, "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"를 "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	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4		
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<u>제2장</u>	<u>제2장</u>		
<u>(외환의 죄),</u> 「군형법」 제2편	(외환의죄), 제24장(살인의 죄),		
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			
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	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		
<u>는 제외한다)에</u> 규정된 죄를	한다), 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		
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-		
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			
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			
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			
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		
	<u>.</u>		